

# 제3차 사규심의위원회 수정의결내역

## □ 준법심사규정

제정안	수정의결	비고
<p>제5조 (심사대상 업무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 <p>라. (생략)</p>	<p>제5조 (심사대상 업무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사항 가운데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	<p>-문구수정 : 제5조제1항상의 심사대상업무 중 제외대상이 같은조제2항각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.</p> <p>-항목수정 : 사규체계상 “항”의 하위가 “호”임</p>
<p>제7조(심사 요청시기) ① <u>주관부서의 장</u>은 심사대상 업무의 방침수립 이전에 준법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주관부서의 장</u>은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준법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심사 요청시기) <u>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업무의 방침수립 이전에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준법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문구수정 : 1,2항을 통합하여 규정함</p>